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6. 22(목) 10:00

제244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교통건설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32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31.
- 라. 회부일자 : 2023. 5. 3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44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관련서류 : 2022회계연도 결산서(안)

4. 예비비 지출 현황

○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단위: 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1,492,000,000	1,250,000,000	242,000,000	
교통행정과	교통개선사업	60,000,000	60,000,000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2021.1.21.) 자치구 재난지원 사업 실시 결의에 따라 재원 마련
	택시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사업	880,000,000	756,800,000	123,200,000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의 결과(2021.1.21.) 자치구 재난지원 사업 실시 결의에 따라 재원 마련
	화물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552,000,000	433,200,000	118,800,0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수 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

○ 일반 예비비

(단위: 원)

부서명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계		38,073,000	38,073,000	0	
도로과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38,073,000	38,073,000	0	'금동초교 내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 본 공사의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감리용역 기간 연장

5. 검토의견

- 2022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비비 지출은
교통행정과 3건 12억 5,000만원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로
지출하였음.
도로과는 1건 3,807만 3천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함
- 교통건설국의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타당한 지출이라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6. 7.] [법률 제19428호, 2023. 6. 7., 일부개정]

-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전문개정 2011. 8. 4.]